

2016. 4. 29

서울시 청년층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신용회복지원 및 소액금융지원사업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라 한다) 및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서울시에 거주중인 청년(이하 "서울시 청년"이라 한다)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서울시 청년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및 소액금융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시, 신복위, 우리은행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여 동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양해각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지원금"은 우리은행이 신복위에게 대여하는 자금을 말한다.
- ② "대출금"은 신복위가 소액금융지원사업 "수혜자"에게 대출하는 금전을 말한다.
- ③ "위기탈출론"이라 함은 "지원금" 중 고금리차환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금을 말한다.
- ④ "한강론"이라 함은 "지원금" 중 긴급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금을 말한다.
- ⑤ "대출사업"은 신복위가 서울시 청년에게 지원하는 금전대출 사업을 말한다.
- ⑥ "수혜자"는 신복위의 "대출사업"을 통하여 금전을 대출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금의 대여) 우리은행은 동 사업을 위하여 2012년 4월, 2014년 7월, 2015년 7월에 체결한 협약에 의거한 지원금 총한도금액 60억원의 범위내에서 우리은행 내부 규정에 따르고 년 이자율은 서울시와 우리은행이 협의하여 대여하고, 그 이자는 서울시가 부담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기존 금리를 유지한다.

제4조(지원조건 및 지원금 상환) ① 신복위는 지원금을 수령한 일로부터 5년이내에 우리은행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단, 동 기간까지 수혜자가 상환하지 못한 대출금이 있는 경우 신복위와 서울시는 다음과 같이 정산 처리한다.

- 1. 한강론은 제6조에 의한 보험금을 수령하여 상환한다.
 - 2. 위기탈출론은 한강론을 포함한 총 지원금 운용이자 및 대출금 이자액에서 한강론 보증보험료와 대출금 송금·반환·회수 관련 은행간 수수료를 제외한 잔액을 상환하며 동 잔액을 초과하는 미회수 대출금은 서울시가 부담한다.
- ② 지원금의 대여와 관련한 조건은 신복위와 우리은행이 체결하는 대출 약정을 우선으로 하여 따르고, 우리은행은 대출약정을 서울시에 통보한다.

제5조(지원금의 사용) ① 신복위는 지원금을 서울시 거주 만40세 미만인 청년층에게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대환대출금(위기탈출론)과 소액 생활자금 용도(한강론)의 대출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그 밖의 대출에 수반되는 비용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대출조건 등에 대한 세부 내역은 「별첨1」, 지원금 자금용도별 한도 변경 및 지원금 등에 대한 세부 내역은 「별첨2」와 같다.

② 향후 본 조항의 「별첨1」 또는 「별첨2」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간에 공문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협약기관의 승인 공문서 수령 시점 부터 적용된다.

제6조(개인금융신용보험 가입 등) ① 신복위는 한강론 수혜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할 때 서울보증보험(주)의 개인금융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대출금 연체 등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② 개인금융신용보험 가입절차, 보상 손해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서울보증보험(주)간의 별도 계약에 의한다.

제7조(구분계리) 신복위는 “지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회계장부를 지원기간 종료 이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자금의 반환) 서울시는 신복위가 사업계획과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리은행에 반환하도록 신복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신복위는 서울시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지) ① 서울시 및 우리은행은 신복위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신복위의 파산회생절차 개시·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
2. 신복위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개시, 영업정지인허가취소 등 처분 받은 경우
3. 서울시, 신복위, 우리은행의 협약의무 불이행 및 협약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 신복위는 우리은행에게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지원금 반환절차는 우리은행과 신복위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신복위는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시에는 이를 즉시 서울시 및 우리은행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대출조건 등) ① 신복위가 지원하는 대출금액은 별첨의 대출조건에 따른다.

② 대출금의 대손처리, 기타 대출조건 등은 신복위의 소액금융지원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1조(협약기간) 이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협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미상환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본 협약이 계속 적용된다.

제12조(협약준수 의무) 서울시와 신복위, 우리은행은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서울특별시에 거주중인 청년의 신용회복지원 및 소액금융지원을 위하여 합의하고 본 협약서에 다음과 같이 기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16년 4월 27 일

서울특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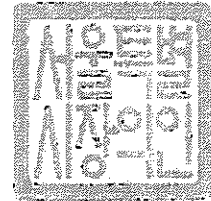
박 원 순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김 윤 영

우리은행 은행장

이 광 구



[별첨1]

대출조건 등

구 분	위기탈출론	한강론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거주 40세 미만인 자로서 신용회복지원 신청자에 대한 채무조정에서 제외된 채무 및 기 채무조정 지원을 받은 자의 변제기간 중 발생 채무 중 지원일 기준 6개월 이전 발생한 연20% 이상 고금리채무를 대여금 5백만원으로 전부 상환이 가능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거주 40세 미만인 자로 신용회복을 지원받아 9회차 이상 채무조정 변제금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자 중 긴급자금이 필요한 자
대출한도	1인당 5백만원 이내	1인당 1천만원 이내
상환방법	5년 이내 분할상환 (거치기간 최장 2년 포함)	5년 이내 분할상환
이자율	연 4%	연 3%
보험가입	보험가입 불가	보험가입
보험료부담	없음	신복위가 이자 수익에서 총당
대손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는 신복위가 지원금 수령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우리은행에 상환하지 못한 원금에 대해서는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 우리은행에 현금으로 지급(이하 "대손금 부담"이라 한다)한다. - 서울시가 대손금을 부담한 이후에 신복위가 수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한 경우 신복위는 서울시가 부담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서울시에 지급한다 - 서울시가 대손금을 부담한 후 신복위에 관련 대출채권 양도를 요청하는 경우 신복위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원금상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복위는 분기말 기준으로 수해자가 상환하는 원금을 정산하여 익월 5영업일 이내에 우리은행에 상환한다 - 이 경우 우리은행은 조기상환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별첨2]

지원금 자금용도별 한도변경 및 지원금 등에 대한 세부내역

변경일자	변경전	변경후	비고
'12. 04월	○ 최초 협약 실시 (총대여한도 60억원 범위내) - 한강론 : 30억원 - 회망론 : 30억원	-	
'12. 10월	○ 회망론 지원대상자 변경 (총대여한도 60억원 범위내) - 적격자 : 서울시 거주 35세 미만	○ 회망론 지원대상자 변경 (총대여한도 60억원 범위내) - 적격자 : 서울시 거주 40세 미만	
'13. 03월	○ 자금용도별 한도변경 (총대여한도 60억원 범위내) - 회망론 : 30억원 - 한강론 : 30억원	○ 자금용도별 한도변경 (총대여한도 60억원 범위내) - 회망론 : 10억원 - 한강론 : 50억원	
'14. 07월	○ 자금용도별 한도변경 (총대여한도 60억원 범위내) - 회망론 : 10억원 - 한강론 : 50억원	○ 자금용도별 한도 변경 (총대여한도 60억원 범위내) ○ 31억7천만원으로 한도 감액하고 감액한 금액만큼 건별대출로 전환 - 한강론 : 50억원 → 31.7억원 (한도대출) - 신규 대여금 28.3억원 - 한강론 : 20억원(건별대출) - 회망론 : 폐지 → 위기탈출론 : 8.3억원(건별대출)	
'15. 07월	○ 자금용도별 한도변경 (총대여한도 60억원 범위내) - 한강론 : 31.7억원(한도대출) - 한강론 : 20억원(건별대출) - 위기탈출론 : 8.3억원(건별대출)	○ 자금용도별 한도변경 (총대여한도 60억원 범위내) ○ 11억 7천만원으로 한도 감액하고 감액한 금액만큼 건별대출로 전환 - 한강론 : 31.7억원 → 11.7억원 (한도대출) - 신규 대여금 20억원(건별대출) (위기탈출론+한강론)	

[별첨1]

16.7.1

대출조건 등

구 분	위기탈출론	한강론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거주 40세 미만인 자로서 신용회복지원 신청자에 대한 채무조정에서 제외된 채무 및 기 채무조정 지원을 받은 자의 변제기간 중 발생 채무 중 지원일 기준 6개월 이전 발생한 연20% 이상 고금리채무를 대역금 5백만원으로 전부 상환이 가능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거주 40세 미만인 자로 신용회복을 지원받아 9회차 이상 채무조정 변제금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자 중 긴급자금이 필요한 자
대출한도	1인당 5백만원 이내	1인당 12백만원 이내
상환방법	5년 이내 분할상환 (거치기간 최장 2년 포함)	5년 이내 분할상환
이자율	연 4%	연 3%
보험가입	보험가입 불가	보험가입
보험료부담	없음	신복위가 이자 수익에서 총당
대손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는 신복위가 지원금 수령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우리은행에 상환하지 못한 원금에 대해서는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 우리은행에 현금으로 지급(이하 "대손금 부담"이라 한다)한다. - 서울시가 대손금을 부담한 이후에 신복위가 수혜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한 경우 신복위는 서울시가 부담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서울시에 지급한다 - 서울시가 대손금을 부담한 후 신복위에 관련 대출채권 양도를 요청하는 경우 신복위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원금상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복위는 분기말 기준으로 수혜자가 상환하는 원금을 정산하여 익월 5영업일 이내에 우리은행에 상환한다 - 이 경우 우리은행은 조기상환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별첨2]

17.11.28

지원금 자금용도별 한도변경 및 지원금 등에 대한 세부내역

변경일자	변경전	변경후	비고
'12. 04월	○ 최초 협약 실시 (총대여한도 60억원 범위내) - 한강론 : 30억원 - 희망론 : 30억원	-	
'12. 10월	○ 희망론 지원대상자 변경 (총대여한도 60억원 범위내) - 적격자 : 서울시 거주 35세 미만	○ 희망론 지원대상자 변경 (총대여한도 60억원 범위내) - 적격자 : 서울시 거주 40세 미만	
'13. 03월	○ 자금용도별 한도변경 (총대여한도 60억원 범위내) - 희망론 : 30억원 - 한강론 : 30억원	○ 자금용도별 한도변경 (총대여한도 60억원 범위내) - 희망론 : 10억원 - 한강론 : 50억원	
'14. 07월	○ 자금용도별 한도변경 (총대여한도 60억원 범위내) - 희망론 : 10억원 - 한강론 : 50억원	○ 자금용도별 한도 변경 (총대여한도 60억원 범위내) ○ 31억7천만원으로 한도 감액하고 감액한 금액만큼 건별대출로 전환 - 한강론 : 50억원 → 31.7억원 (한도대출) - 신규 대여금 28.3억원 - 한강론 : 20억원(건별대출) - 희망론 : 폐지 → 위기탈출론 : 8.3억원(건별대출)	
'15. 07월	○ 자금용도별 한도변경 (총대여한도 60억원 범위내) - 한강론 : 31.7억원(한도대출) - 한강론 : 20억원(건별대출) - 위기탈출론 : 8.3억원(건별대출)	○ 자금용도별 한도변경 (총대여한도 60억원 범위내) ○ 11억 7천만원으로 한도 감액하고 감액한 금액만큼 건별대출로 전환 - 한강론 : 31.7억원 → 11.7억원 (한도대출) - 신규 대여금 20억원(건별대출) (위기탈출론+한강론)	
'16. 05월	○ 자금용도별 한도변경 (총대여한도 60억원 범위내) - 한강론 : 11.7억원(한도대출) - 한강론+위기탈출론 : 20억원 (건별대출)	○ 자금용도별 한도변경 - 한강론 : 11.7억원 → 0원 (한도대출 약정 해지) ○ 총대여한도 60억원 범위내 - 신규 대여금 10억원(건별대출) (위기탈출론+한강론)	

변경일자	변경전	변경후	비고
'16.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용도별 한도변경 - 한강론 : 11.7억원 → 0원 (한도대출 약정 해지) ○ 총대여한도 60억원 범위내 - 신규 대여금 10억원(건별대출) (위기탈출론+한강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대여한도 60억원 범위내 - 신규 대여금 10억원(건별대출) (위기탈출론+한강론) 	
'17. 0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대여한도 60억원 범위내 - 신규 대여금 10억원(건별대출) (위기탈출론+한강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대여한도 60억원 범위내 - 신규 대여금 10억원(건별대출) (한강론) - 위기탈출론 : 폐지 	
'17.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대여한도 60억원 범위내 - 신규 대여금 10억원(건별대출) (한강론) - 위기탈출론 :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대여한도 60억원 범위내 - 신규 대여금 10억원(건별대출) (한강론) - 총대여금 잔액 : 3,794백만원 - 잔여대여금 한도 : 2,206백만원 	

[별첨1]

18.3.19

대출조건 등

구 분	한강론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40세 미만인 자로 신용회복을 지원받아 6회차 이상 채무 조정 변제금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자 중 긴급자금이 필요한 자
대출한도	1인당 12백만원 이내
상환방법	5년 이내 분할상환
이자율	연 3%
보험가입	보험가입
보험료부담	신복위가 이자 수익에서 총당
대손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는 신복위가 지원금 수령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우리은행에 상환하지 못한 원금에 대해서는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 우리은행에 현금으로 지급(이하 "대손금 부담"이라 한다)한다. - 서울시가 대손금을 부담한 이후에 신복위가 수혜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한 경우 신복위는 서울시가 부담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서울시에 지급한다 - 서울시가 대손금을 부담한 후 신복위에 관련 대출채권 양도를 요청하는 경우 신복위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원금상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복위는 분기말 기준으로 수혜자가 상환하는 원금을 정산하여 익월 5영업일 이내에 우리은행에 상환한다 - 이 경우 우리은행은 조기상환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